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 : 김용호 의원
- 나. 의안번호 : 제2786호
- 다. 발의일자 : 2025년 5월 26일
- 라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

2. 제 안 이 유

- 노인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(고령화 사회 대응 정책의 일환)를 위해 서울특별시 내 공공 체육시설(축구장)의 이용에 있어서 '만 65세 이상인 사람'에 대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만 65세 이상 이용자에 대한 공원 체육시설(축구장) 이용료의 감면사항을 추가하고자 함(안 별표2)

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노인복지법」, 「체육시설법 시행령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미첨부사유서)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‘만 65세 이상인 사람’의 서울시 내 공공 체육시설 중 축구장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) 제40조는 공원관리청이 입장료 및 공원시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(제1항) 각 시설의 요금과 징수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(제2항).

서울시는 법 제2조제4호¹⁾에서 정하는 공원시설 중 운동시설, 교양시설, 편익시설 등에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관련 사항은 현행 조례 제15조(공원입장료 및 이용료), 제16조(공원시설의 사용료), 제17조(점용료)에 규정되어 있으며, 구체적인 사항은 [별표]로 정하고 있음²⁾.

- 고령자의 건강 증진 및 공공 체육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,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중 축구장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특정 연령층에만 감면 혜택을 부과³⁾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축구 경기의 특성상 구성원 중 일부만 감면 대상일 경우 이를 식별하는 것과 적용 기준 설정이 모호할 수 있음.

1)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4. "공원시설"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
가.~라. (생략)

마. 테니스장, 수영장, 궁도장 등 운동시설

바. 식물원, 동물원, 수족관, 박물관,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

사. 주차장, 매점,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

아.~카. (생략)

2) [별표 1] 공원입장료(제15조제1항 관련)

[별표 2] 공원시설 이용료(제15조제1항 관련)

[별표 3] 공원 및 녹지 점용료(제17조 관련)

3) 시설이용료 감면현황

- 풋살경기장(청소년 30% 할인 및 어린이 면제, 팀원 50% 이상 요건),
- 파크골프장(평일 단체 30% 할인)
- 국궁장(65세 이상 30% 할인)에서 감면 제도 운영 중

따라서 조례 개정에 앞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, 연령별 할인 정책이 각각 다른 공원 시설별 이용료(입장료)에 대해서는 향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통합 감면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- 한편, ‘공원 입장료’에 대해서는 현재 동 조례 제20조에 따라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감면을 시행하고 있음⁴⁾.

4) 제20조(요금의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(생략)
2. 6세 미만의 사람, 65세 이상의 사람과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)
- 3.~16. (생략)